

## 2021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

혁신 물기술을 보유하고 국내·외 사업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을 주도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'혁신형물기업 지정·지원 사업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희망하는 물산업 중소기업은 2021. 04. 11(일) 18: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3월 2일

한국물산업협회장

### 1

### 사업개요

#### ☐ 사업 목적

- R&D·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며 연구개발·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
-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

#### ☐ 사업 규모

- 총 750백만원 내외 (75백만원×10개사)  
※ 지정기업당 매년 75백만원 내외 5년간 지원

#### ☐ (사업 기간) 협약체결일 ~ 사업 종료 시까지(유효기간 5년)

#### ☐ (공고 및 신청·접수기관) 한국물산업협회

## 2

## 신청자격 요건

### □ 신청자격 필수요건

-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신청기업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.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| 필수요건 세부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업종                    |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'물산업'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업력                    | - 최근 2년 이상 회계결산 재무제표 보유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요건<br>(中 2개<br>이상 충족) | -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% 이상<br>-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% 이상<br>- 외국의 정부,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인증*을 받은 부품·장치·기기·기술 또는 공법 보유 |

\* 국내 정부, 공공기관 또는 협회로부터 받은 부품·장치·기기·기술 또는 공법 인증은 신청자격 요건으로 불인정 함

## 3

## 참여제한

-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」제2조제3호의 물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- 타인의 지식재산권\*을 침해하는 경우
  - \* 지식재산권중 산업재산권(특허권·실용신안권)에 한하며, 확정된 경우(특허심판원)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
- 신청기업이 휴업·폐업 중인 경우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(단, 신청전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)
- 최근 2년간 평균 부채비율이 500% 이상 인 경우 또는 최근 2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

## 4

## 사업신청 및 추진절차

### □ 혁신형 물기업 지원사업 평가 및 지정심의 일정(안)

- 공고 및 접수 : 2021. 3. 2.(화) ~ 4. 11.(일), 41일간
- 사전검토 : 2021. 4. 12.(월) ~ 4. 19.(월)
- 1차 서류평가 : 2021. 4. 22.(목), 10:00 ~ 16:00
- 2차 발표평가 대상 통보 : 2021. 4. 23.(금)(발표평가 일정은 개별통보)

<2차 발표평가 대상기업 제출 필요 자료>

- 발표용 PT 자료 : 4.2(수) 17:00까지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(자료변경시)
- 2차 발표평가 당일 복사본 10부 제출

- 2차 발표평가 : 2021. 4. 29.(목), 13:00 ~ 18:00
  - ※ 평가장에는 사업책임자를 포함, 최대 2인까지 참석 가능
- 최종 지정심의 : 2021. 5. 4.(화), 14:00 ~ 18:00(물산업기술심사단)
- 결과 통보 : 2021. 5. 7.(금)
  - ※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가능
- 지정서 수여식 : 2021. 5. (예정)

### □ 추진절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고 및 신청·접수(3.2~4.11)     | ■ 한국물산업협의회(온·오프라인 공고 및 온라인 접수)   |
| ▼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전검토(4.12~19)            | ■ 한국물산업협의회(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)   |
| ▼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평가(1차, 4.22), (2차, 4.29) | ■ 평가(1차 서류평가, 2차 발표평가)           |
| ▼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정심의(5.4)                | ■ 물산업기술심사단 지정심의(10개사) ※지정통보(5.7) |
| ▼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정서 교부                   | ■ 환경부(10개사)                      |
| ▼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성과평가                     | ■ 전년도 실적에 대한 정기평가(년 1회)          |
| ▼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협약 체결                    | ■ 혁신형물기업↔한국물산업협의회                |
| ▼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(현장)중간점검                 | ■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의 지원예산 사용점검 및 현장확인 |
| ▼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산 및 사후관리                | ■ 혁신형물기업↔한국물산업협의회↔환경부            |

## 5

## 지정 유효기간

□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은 지정일 이후 5년간 유효함. 다만, 매년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지정취소 할 수 있음.

\*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혁신형 물기업 지정 등) 및 시행령 16조(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)

□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에 대해 연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

\*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혁신형 물기업의 지원) 및 시행령 17조(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)

## 6

## 지원 내용

□ 혁신기술진단 및 고도화, 혁신기술 해외진출, 판로개척 등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액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혁신기술<br>진단 및<br>고도화<br>(개별지원) | <b>기업 현황진단 및 R&amp;D전략 설계 지원</b><br>- 전문 컨설팅 기관을 활용한 기업현황 진단, 기업별 특성에 맞는 중·장기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<br>-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기술 가치평가 및 고도화 지원 | 기업당<br>6천만원<br>이내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연구시설 개선 지원</b><br>- 안정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시설 개선비용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제품 규격화 제작지원</b><br>- 혁신기술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규격화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혁신기술<br>해외진출<br>(개별지원)        | <b>현지 테스트 및 기술 검증 지원</b><br>- 테스트 베드(Test-Bed) 등을 활용한 신제품 성능평가 지원<br>- 현지 테스트 베드 설치를 통한 기술 검증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당<br>75백만원<br>이내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</b><br>- 해외발주처 요구를 반영한 변형 시제품 제작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</b><br>- 비관세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국제인증 획득 등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판로개척<br>(공동지원)                | <b>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지원</b><br>-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연구개발 투자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당<br>75백만원<br>이내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지원</b><br>- 해외 주요 물산업 전시회 참가지원 및 혁신형 물기업 해외홍보 등을 통한 물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
※ 당해년도 예산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75백만원/년 지원

## 7

## 사후 관리

### □ 지정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및 성과 모니터링

※ 정기평가 : 연 1회, 종합평가 : 5년/1회

-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의견수렴(수시)
- 국내외 사업실적, 보유기술의 실용화 실적, 고용 창출 실적에 대한 성과관리

### □ 혁신형 물기업 지정 자격 요건 점검 (1년단위)

- 지정기업에 대한 자격 기준 검토

## 8

## 사업신청 방법

- 접수기간 : 2021. 03. 02.(화) ~ 04. 11.(일),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- 제출서류 : 별지 제1호\*, 2호, 4호, 5호 서식, 발표자료\* 및 관련 서류 일체 (「혁신형 물기업 운영규정」 참조)

\* 신청일은 마감일과 동일하게 기재 요망

\* 혁신기술 중심으로 10페이지 이내 작성하여 제출

제출예시) 기업명.zip(파일명)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신청서_기업명                | 5-3. 국세 및 지방세납입증명서       |
| 2. 사업현황 설명 자료_기업명         | 5-4. 재무재표('19&'20년),     |
| 3. 수출실적 집계표_기업명           | 5-5. 인증서(국외), 5-7. 지식재산권 |
| 3-1. 증명서                  | 5-6. 고용보험명부              |
| 4.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_기업명        | 6. 가점 서류_기업명             |
| 5. 제출서류_기업명               | 6-1. NET                 |
| 5-1. 사업자등록증, 5-2. 중소기업확인서 | 6-2. 기타                  |
| 5-2. 법인등기부등본              | 7. 발표자료                  |

- 접수방법 : 메일(innowater@kwp.or.kr)

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마감일 4.11.(일), 18시 이후 자료제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□ 한국물산업협의회 혁신형 물기업 담당자

○ 전 화 : 02-2634-6783~4 / 이메일 : innowater@kwp.or.kr

| 목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기관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사업자등록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세청 홈택스<br>( 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www.hometax.go.kr</a>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중소기업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소벤처기업부<br>( <a href="http://www.mss.go.kr">www.mss.go.kr</a>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법인등기부등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터넷 등기소<br>( <a href="http://www.iros.go.kr">www.iros.go.kr</a>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<br>-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증명서만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세청 홈택스<br>( 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www.hometax.go.kr</a>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최근 2년 결산 표준재무재표증명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세청 홈택스<br>( 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www.hometax.go.kr</a>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<br>○ 수출실적 조회시스템 정보제공 동의 진행<br>○ 신청일 기준(최근 2년 이상) 최종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 및 기타 수출·실적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직접수출 : 한국무역협회( <a href="http://www.kita.net">www.kita.net</a> ),<br>외국환은행장,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<br>○ 간접수출 : 한국무역정보통신( <a href="http://www.ktnet.co.kr">www.ktnet.co.kr</a> )<br>또는 은행별 수출실적증명원 |
| 7. 해외 인증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기업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 등) 증빙서류<br>○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( <a href="http://www.kipris.or.kr">www.kipris.or.kr</a> ) →<br>SEARCH → 특허·실용신안 → 검색<br>-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| 특허청<br>( <a href="http://www.kipo.or.kr">www.kipo.or.kr</a>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<br>ex) '21.3월말, '20.12월말, '19.12월말<br>○ 기업회원 로그인/기업서비스/조회/취득자 전체, 특정일 지정, 조회, 전체 인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고용정보원<br>( <a href="http://www.ei.go.kr">www.ei.go.kr</a>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NET<br>○ NET신기술인증( <a href="http://www.netmark.or.kr">www.netmark.or.kr</a> ) → 검색 → 상세<br>검색 → 회사명 → 검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. Inno-Biz기업<br>○ 지방청 이노비즈기업 담당자 확인<br>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( <a href="http://www.innobiz.net">www.innobiz.net</a> ) 기타신청<br>→확인서사본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<br>○ 이노비즈협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. 기업부설연구소<br>○ koita 연구소/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<br>( <a href="http://www.rnd.or.kr">www.rnd.or.kr</a> ) → 바로가기 서비스 → 인증서 출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. 기타 가점 증빙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기업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